

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사업장명		대표자	
	소재지		①전화번호	
	사업의 종류		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	

사실관계 기재란	• []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• []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• []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• [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• []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
----------	--

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

[illegible]

※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.

우리 사업장에서는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위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. 아울러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
이
아
그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외국인등록증 사본 2. 여권 사본 3. 표준근로계약서 사본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①란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.
3. ②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.
4. ③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.
5. ④란의 총 국내 체류기간은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(E-9) 또는 선원취업(E-10)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했던 전체 기간을 개월수로 적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